

#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6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5.

발의자 : 이종성 · 백종현 · 박정하  
배준영 · 김용판 · 박대수  
전봉민 · 김영식 · 조정훈  
장기윤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,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· 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,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「한의약 육성법」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.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 ·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한의약 관련 연구 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 · 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, 데이터 및 통계 조사 · 연구 · 수집 · 분석과 활용 · 제공 업무, 연구개발사업 기획 ·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,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

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##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

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출연”을 “출연 또는 보조”로 한다.

4의2.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·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·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

4의3. 한의약 관련 데이터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) 및 통계의 조사·연구·수집·분석과 활용·제공

4의4.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한국한의약진흥원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3조(한국한의약진흥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의2.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 ·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 ·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4의3. 한의약 관련 데이터(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) 및 통계의 조사 · 연구 · 수집 · 분석과 활용 · 제공</u></p>
<p>5. ~ 9. (생 략)</p> <p>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<u>출연</u>할 수 있다.</p>	<p>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.</p> <p>----- <u>출연 또는 보조</u> -----.</p>
<p>⑦ (생 략)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